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1. 9.(수) 14:00 2022. 11. 10.(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11. 9.(수) 14:00
담당 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	책임자	과 장 이지영 (044-202-7994)
		담당자	사무관 이상전 (044-202-7541)
			주무관 이 환 (044-202-7974)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 8시간 추가근로제 활용 중인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 등 사업주·근로자 참석, 현장 애로 논의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9일(수)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 아카데미홀)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를 사용**하는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9.(수) 14:00~15: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

○ **(참석자)** <사업장>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4개소)의 노·사 총 8명
<우리부> 장관, 근로감독정책단장, 임금근로시간과장 등

○ **(논의사항)** 8시간 추가근로제를 활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 제도개선 사항 등 논의

지난 10월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민생대책'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되었다.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었지만,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 인사·노무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하여 1주 동안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둔 것이다.

제도 유효기간 종료(2022년 12월 31일)를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업의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폐지 관련 현장의 목소리 >

- **(사례1: 제조업)** 젊은 인력이 추가 채용 되지 않아 현재 직원 평균연령은 50대, **8시간 추가근로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정도 밖에 대응이 되지 않아 제도 폐지시 구인난에 더해 이윤 감소 등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임
- **(사례2: 조선업) 조선업은 산업 공정상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연·월·주별 생산량에 따른 업무량 불균형이 심하여 인력 운영 및 근로시간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고,** 인력(일용직 등)을 탄력적으로 적기에 수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추가근로제 필요**
- **(사례3: 재활용·폐기물처리업)** 재활용품 분류 및 폐기 사업장들은 지역 사회의 필수 사업장이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사유로 **구인이 어려움. 그럼에도 코로나 사태 등의 여파로 폐기물 분류 업무량은 증가하여 추가근로제 없이는 근로시간 준수 어려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와 근로자**들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주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생산에 차질**을 보일 것이고, 연장근로 수당이 감소하여 **지금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였다.

참석자 중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ㄱ씨**는 "인력채용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 급증 시**에는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가근로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였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ㄴ씨는 "발주처의 주문 제작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물량 예측이 어렵고**, 제품마다 제작 소요시간이 달라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추가채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구인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나마 올해까지는 추가 8시간**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ㄷ씨는 “임금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추가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줄지 않아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삼중고의 경제상황**이 맞물리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라면서,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나, 이의 입법 및 적용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민생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8시간 추가근로제 관련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붙임2. 현장 간담회 개요
붙임3. 인사말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8시간 추가근로제 관련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연번	업종 등	애로사항 등
1	철강	월별로 수주량의 변동량이 많은 편이라 추가연장근로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생산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임, 만약, 최대 생산량에 맞춰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 채용한다면, 생산량이 줄었을 땐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됨. 게다가, 기계작업 등 어느 정도 숙련도가 필요한 작업이 많아, 추가인력 필요시에 일용직을 사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사실상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일몰 폐지하거나 최대한 연장해야 함. 아울러 현재 8시간인 추가연장근로 한도도 부족하므로 확대할 필요
2	볼트 및 너트류 제조	8시간 추가근로제 없어지면, 생산성은 감소하고, 납기는 지연될 것이며, 연장수당 감소로 근로자들 불만이 폭증할 것임. 교대근무를 한다 해도, 임시방편일 뿐 생산 단가는 상승하고, 생산성은 오히려 저하되어 경쟁력 떨어질 것. 이 제도 말고는 대책 없으므로, 일몰 폐지하고 주 8시간인 추가연장근로 한도도 확대해야 함
3	열처리	8시간 추가근로제도가 폐지되면, 추가채용밖에는 대책이 없으나, 낮아진 임금으로는 국내 인력 채용은 어렵고 외국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는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음. 휴게시간을 더 까다롭게 관리하는 것도 방법인데 근로자들이 힘들어할 것임. 납기일을 연장해볼 수 있으나, 거래처에서 싫어하고, 자칫 거래관계가 끊길 수도 있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
4	재활용·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분류 및 폐기 사업장들은 지역 사회의 필수 사업장이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사유로 구인이 어려움. 그럼에도 코로나 사태 등의 여파로 폐기물 분류 업무량은 증가하여 주52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은 더욱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이 큼. 추가근로제마저 없었다면 사업 유지 불가할 정도, 추가근로제도 올해 말로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연장되어야 함. 그 외에도 해당 업종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5	도금	추가인력 확보를 위해 1년 이상 노력 중이지만, 내국인 고용은 여전히 어려움이 큼.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이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여기에 주52시간제 대응까지 더해지면 중소기업 운영과 근로자 임금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음. 유일한 주52시간제 대응 방안은 추가인력 확보이나,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8시간 추가근로제가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연장되어야 함. 또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가 도입되었으면 함
6	조선	조선업은 세계로부터 수주받은 제품(선종)을 정해진 공기에 반드시 납품해야 하는 산업. 공정상에 여러 가지 변수 요인이 많아 연·월·주별 부하 불균형이 심하여 인력 운영 및 근로시간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우며, 인력을 탄력적으로 적기에 수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8시간 추가근로제 허용이 필요함

※ 중소기업 애로 사례 조사(중소기업중앙회), 설명회 건의사항, 국민 제안 등에서 발췌

붙임 2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022. 11.9.(수) 14:00~15:00, 서울청 9층 아카데미홀

□ 참석자(총 11명)

○ (기업)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 등 사업장 총 4개소의 사업주, 근로자 총 8명

○ (우리부) 장관, 근로감독정책단장, 임금근로시간과장 등

□ 세부 일정 ***인사 말씀까지 언론 공개** (사회: 임금근로시간과장)

시간	진행 내용	비고
14:00	■ 장관 입장, 순회 인사('3)	공개
14:03	■ 기념 촬영('2) - 간담회 참석자 전원과 현수막 앞에서 기념촬영	
14:05 ~15:00	■ 간담회('55)	
	- 참석자 소개('2) *참석자가 기업, 수행 업무 등 소개<진행: 사회자>	
	- 장관 인사 말씀('5)	
	-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사항 등 논의('45)	비공개
	- 장관님 마무리 말씀('3)	

붙임 3 **인사말씀**

□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오늘 간담회**는 주 52시간제에 더해 **8시간 추가근로제**를 사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 최근 통계를 보면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의 **인력 부족률**은 **3.7%로,** 5인 이상 평균인 3.2%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 '22.4.1 기준, 전 산업의 규모별 인력 부족률(= 부족인원 / (현원+부족인원)):
▲**5인 이상 전체 3.2%** ▲**5~29인 3.7%** ▲30~99인 3.8% ▲100~299인 3.2% ▲300인 이상 1.7%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2.上), 수치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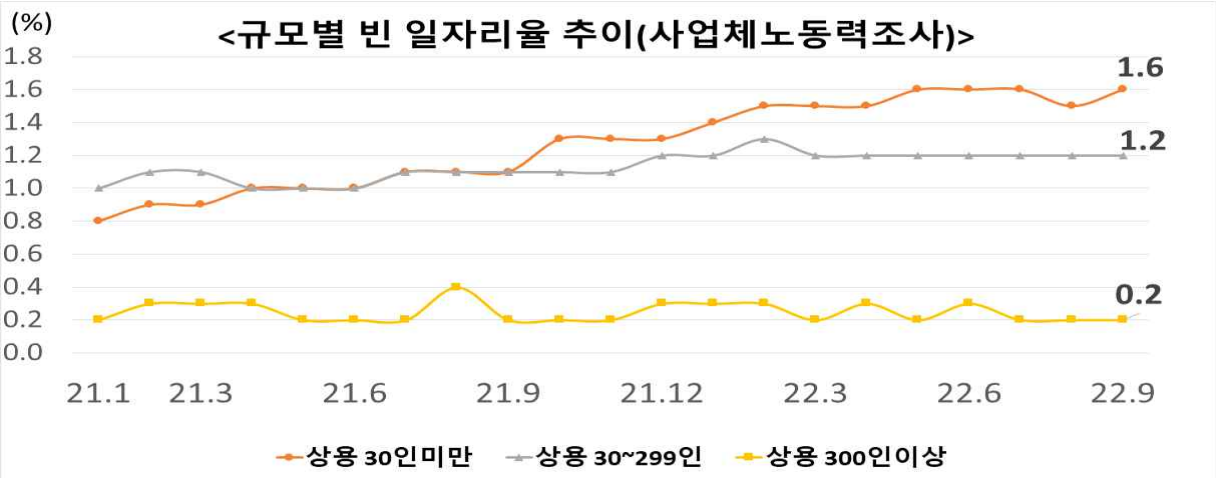
○ 특히, 30인 미만 **숙박·음식업**은 **6.4%, 제조업은 6.0%로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숙박·음식) ▲**5인 이상 전체 6.0%** ▲**5~29인 6.4%** ▲30~99인 5.4% ▲100~299인 4.0% ▲300인 이상 2.7%

* (제조업) ▲**5인 이상 전체 4.1%** ▲**5~29인 6.0%** ▲30~99인 4.5% ▲100~299인 3.2% ▲300인 이상 1.1%

□ 또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21.9월~'22.9월) **30인 미만**(1~29인) 사업장의
빈 일자리율은 **'21년 9월 1.1%에서 '22년 9월 1.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 반면, **다른 규모의**(30인~299인, 300인 이상) **빈 일자리율은**
거의 변동이 없어 30인 미만 사업장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 빈 일자리율: '상시 빈 일자리 수 / (상시 빈 일자리 수+상시 근로자 수)'
* 빈 일자리 수: 조사기준월의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
* 사업장 규모는 상용 근로자 수 기준, 수치는 잠정치

□ 이에, 정부는 **지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효기간 연장(부칙 개정, 모두 2년 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추경호('20.7.31)·권명호('22.10.27) 의원안 등 2건 발의

□ 한편, 현재「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을 통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입니다.

○ 다만, 이의 **입법 및 적용**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 **당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2년)**'을**
추진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오늘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